

경인식약청 수입검사 월간 뉴스레터

제 86호 '26.5.

수입검사관련 정보

◆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품목	주요내용
가공식품등	○ 유럽 등에서 회수 중인 영유아용 조제분유·조제식* 수입신고 시 반려 조치/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384개) ※ 제조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제품명, 제조회사명으로 모든 제조국에 대해 적용 * '바실러스세레우스' 및 생성독소 '세레올리드' 존재 가능성에 따른 예방 조치
	○ 이탈리아 MARABISSI S.R.L사 과자 / 총아플라톡신
	○ 뉴질랜드 THE HOMEGROWN JUICE CO LIMITED사 / 과·채주스(사과주스에 한함) / 파툴린
	○ 베트남 JW CO.,LTD사에서 제조한 식품 / 사이클라메이트
	○ 프랑스 ALAIN MILLIAT SAS사 잼 / 현장검사(유리 조각 혼입 여부, 이취 발생여부 등)
	○ 독일 SACHSISCHE UND DRESDNER BACK- UND SUSSWAREN GMBH & CO. KG사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살모넬라
	○ 중국 QINGDAO ZECHANG FOOD CO.,LTD사 제조 가공식품 / 사이클라메이트
	○ 튀르키예 KIRLIOGLU TARIMSAL URUNLER GIDA INS. SAN. TIC. A.S.사 제조 ①무화과(열매/건조), ②과채가공품(무화과 함유 제품) / 총 아플라톡신
	○ 프랑스 KAVIARI SAS사 기타 수산물가공품(캐비어 함유제품/ 캐비어 원산지 불문) / 붕사
농·축·수산물	○ '26.3.25. 이후 선적되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금지 * 칠레 산티아고 수도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 폴란드 작업장(EST NO 16610501, 등록번호 PL100000132)에서 수입하는 닭고기 부산물 / 동물용의약품 1군(닭고기 155종)
	○ 미국 해외수출업소 KEENAN FARMS사 피스타치오 / 총아플라톡신
	○ 이탈리아 GENNARO AURICCHIO S.P.A.사 치즈류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이탈리아 IGOR S.R.L.사 / 해당 해외작업장의 수입중단('26.4.24.일부터) 이전 선적된 치즈류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 부적합 다빈도 농산물 및 단순가공품 검사 강화 지시

- 검사기간: 2026. 5. 11. ~ 2026. 5. 22. (접수일 기준 약 2주)
-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 검사대상
 - 1) (농산물) 녹두, 딸기, 렌즈콩, 흑후추, 시금치, 피스타치오, 두리안, 흰목이버섯, 강황, 오크라
 - 2) (가공식품) 상기 1)의 농산물을 원료(100%)로 제조한 단순가공품
 - * 건조, 절단, 세척에 한함(가열제외)
 - 검사항목: 잔류농약(514종)

이 달의 보도자료

수입식품 정밀검사 위해도별 강화, 위생교육 규제는 합리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20~6.1)
-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정밀검사, 위해도별 차등 적용
- 수입식품 영업자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합리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도가 높은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개정 내용 >

- ① (안전관리 강화) 부적합 처분 제품의 검사 횟수 위해도별 차등 적용
- ② (현장규제 개선) 수입식품 영업자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합리화

①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또는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이 수입될 경우, 위해도에 따라 검사 횟수를 최대 20회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급 분류 및 등급별 정밀검사 횟수는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예정임

현재는 위해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해도가 높은 검사항목으로 부적합된 제품은 검사 횟수를 상향하여 위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② 현장규제 개선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 * (현행) 영업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매 분기(연 4회) 위생교육 실시
(개정)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를 연간 1시간 이상으로 완화

이번 개정은 '25.11.12.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수입식품편)」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조치로, 그간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의무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유사한 타 법령에 비해 과도한 부분이 있었음에 따라 소규모 영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 민 호 (043-719-2170)
		담당자	사무관	남궁종환 (043-719-2168)

- 의견보내실 곳: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 / ☎ 043-719-2168
(FAX) 043-719-2150 / namkung01@korea.kr

법령 등 개정 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32호, 2026.4.13.)

○ 주요내용

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안 제3.2.2-49 1), 2), 3) 및 4), 제4.3.3-82)

-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신설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

나.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안 제4.2.2-1.4.2.6, 제4.3.3-6, 제4.3.3-8, 제4.3.3-12, 제4.3.3-13, 제4.3.3-32, 제4.3.3-57, 제4.3.3-58)

- 봉해시험법, 비타민 B₁, 나이아신, 비타민 B₁₂, 비오틴, 지방산, 유산균수, 유산균·구균 및 비피더스균 시험법을 개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 2026-166호, 의견제출기한 2026.5.15.까지)

○ 주요내용

가.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피하는 이른바 ‘슈링크 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식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에 대한 위반 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수준 강화 필요성 제기

나.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위반) 품목 제조정지 15일, (2차위반) 품목제조정지 1개월, (3차위반) 품목제조정지 2개월로 개정하는 등 식품등의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 미표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 의견보내실 곳: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 ☎ 043-719-2183
(FAX) 043-719-2180 / heosk@korea.kr

알려드립니다

◆ 농·임·수산물 학명증명서 구비서류 확대 알림[재안내]

- 그간 식품 원재료에서 학명이 정하여져 있는 농·임산물 등에 대해서는 학명자료 및 사용부위 확인증명서를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로 관리하여 왔으나,
- **2026.7.1. 선적분부터는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 변경**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식품등 신고 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요내용	비고
<p>모든국가의 농·임산물 (식품원료 명칭 외에 생약명이 존재하는 식품원료 포함), 수산물</p>	<p>학명이 기재된 자료* (사용부위 확인 증명 포함) *세부 인정범위 붙임 참조</p>	<p>매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 변경 (2026.7.1. 선적분부터 적용)</p>

- * ‘수입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 및 ‘영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세부는 붙임참조, 우리 처 수입식품정보마루>안전정보>수입검사 관련 정보> 증명서 제출에 공지

◆ 수입수산물 검사 관련 알림[재안내]

- 최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교잡종,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자생하지 않는 수산물이 수입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모든 수입 수산물
- 방법: 수입수산물 수입신고시 ‘수입 수산물의 학명 서류’ 확인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위생약정국) 또는 해외제조업소가 발행한 학명증명서 (비약정국)
- 시행시기: 2026.7.1.선적분부터
- 관련문의: 수입검사관리과 043-719-2231

◆ 수입식품 검사 관련 사항 안내[재안내]

○ 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1호)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알룰로오스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에 따라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로서 과당류를 알칼리화 또는 효소적 처리를 통하여 제조할 수 있으나,

나. 최근 관련 규정 개정(예정)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선적일 기준)는 알룰로오스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및 효소제는 「식품위생법」 제7조 관련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원료 인정 당시의 제조용 미생물이거나, 효소제로 인정된 것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알룰로오스 및 알룰로오스를 함유한 가공식품 수입 시에는 위 나.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또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를 구비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수입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관련 문의처

- (미생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원 신소재식품과 043-719-2356
- (효소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043-719-2510
- (제조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043-719-2431

◆ 신규 위생용품 무작위 표본검사 검사 실시 알림

○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의 신규 위생용품 지정 및 시행('25.6.14.)에 따라 1년간 유예되었던 무작위 표본검사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26.6.14.부터 신규 위생용품도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무작위 중점검사 항목은 홈페이지 등에 개별 공지 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4)

◆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PLS 설명회 알림

○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최신 제·개정사항 등 공유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장소: 2026.5.21.(목) 13:30 ~ 16:00 /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 10층(서울 중구)

- 내용: 동물용의약품 PLS 확대계획 및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신청제도 소개

*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방법 매뉴얼(2026) 현장배포

- 신청: 참석희망 명단을 5.13(수)까지 전자메일(mfds508@korea.kr)로 제출

[붙임 1] 수입검사 뉴스레터 신청서

- ◇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에서는 수입 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검사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정책메일서비스(PMS: Policy Mail Service)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정책메일서비스(PMS)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수입관리과 팩스 (02-2110-081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메일서비스(PMS) 등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성명 (필수)	
2. E-mail (필수)	
3. 업소명 (필수)	
4. 관심분야(업종) (중복선택 가능)	1)수입식품() 2)축산물() 3)수산물() 4)위생용품() 5)신고대행업() 6)보관업()
<p>▶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 정책메일서비스(PMS) 등 제공 ※ 수집·이용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p> <p>▶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E-mail, 업소명</p> <p>▶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2년 주기로 재동의 안내 메일 송부, 보유기간 만료 후 자동파기)</p> <p>▶ 동의 거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PMS 등이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p>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_____(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 전화 02-2110-8159 팩스 02-2110-0815